

2

진료비 지급보증

가. 최초 지급보증(사고 후 28일 內)

□ 보험사, 사고접수 후 교통사고환자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확인 시
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

- 최초 지급보증 시 정확한 부상급수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상해급수
구분 없이 동일하게 무기한 지급보증서* 발송이 원칙(현행 동일)

* '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' 별지 제9호 서식

※ 사고발생일로부터 4주 경과 후 최초 내원시,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가능

<참고: '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' 제12조 제1항>

제12조(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)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
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
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
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나. 사고발생일로부터 28일 內 합의 성립

□ 보험사는 '보증 중지일자' 및 '보증 중단사유' 등을 기재한 '교통사고
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'*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에
지급보증 의사 없음을 통보(현행 同一)

* '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' 별지 제2호 서식

※ [예시] 피해자가 치료중 4주 종료일 前 보험사와 합의



➡ '22.1.14일까지만 지불보증하고 익일부터 지불보증 중지 통보